

	중소기업 체험활동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	문서번호	MSU-
		제정일자	2004. 3. 1.
		최종개정일자	
		담당부서	기획산학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에서 학생들의 중소기업 체험을 통한 중소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업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 체험활동(이하 "중활" 이라 한다)에 대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하는 업체(5인 이상 중소기업, 전 업종 및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5인 미만 기업도 대상에 포함)에서 중활을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중활 참여기간) 중활 참여기간은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, 대학 및 업체 간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중활대상자) 모든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적용한다. 단, 계절수업을 마지막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제외한다.

제5조(중활신청) 중활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중소기업청 또는 기획산학처에 비치 된 중활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기획산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점의 인정) 중활을 수료한 자에게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교양 선택 학점으로 (과목명 : 직장체험실습) 인정하며, 학점의 취득은 재학 중 최대 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.

제7조(학점인정 절차) 중활을 수료한자가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료 후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참여확인서를 기획산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기획산학처에서는 취합하여 학점인정요청서<별지 제1호 서식>와 함께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청 중활 운영방안에 준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